

2019년도 4분기 예산전용 내역 보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예산집행상황 등의 제출) 제3항에 따라, 물순환안전국 소관 2019년도 4분기 예산전용 내역을 보고 드림

2019년도 4분기 예산전용 내역

- 예산 전용내역 : 7건, 5,323백만원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건 1.3백만원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6건 5,322백만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전용내역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증감액		변경후 예산액	전용 일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행정 운영 경비	인력운영비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	인력운영비	포상금	성과상여금 (209-303-02)	43.6	-	1.3	42.3	'19.11.26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209-204-02)	21.8	1.3	-	23.1	

○ 전용사유

- 2019년 한강수질개선 특별기금 사업 중 상수원관리지역 관리 사업 예산 편성시('18) 광나루안내센터 청원경찰 직급보조비를 정원기준으로 편성 하였으나, '19.1.8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직급별 지급액 인상으로 부족이 발생하여 1.3백만원을 동일 세부사업인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예상액에서 전용하였음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2019.1.8(대통령령 제29479호)

직급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경감·경위	155,000원	165,000원	
경사	140,000원	155,000원	
경장·순경	125,000원	145,000원	

- 전용금액 계산

- 당초 예산편성 : 21,840천원(140천원×12개월×13명=21,840천원)
- 2019년도 1월~11월 집행액 : 21,138천원, 잔액 : 702천원
- 광나루안내센터 청원경찰(총13명) : 순경상당 6명, 경사상당 3명, 경위상당 4명
- 직급보조비 = 145천원×6명 + 155천원×3명 + 165천원×4명 = 1,995천원
- 전용필요액 : 1,995천원 - 702천원 = 1,293천원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용내역

1. 물재생계획과 - 1건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증감액		변경후 예산액	전용 일자
	관	항	세항	목	통계목		증	감		
기본경비	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751)	일반운영비 (201)	공공운영비 (201-02)	93.2	-	0.42	92.8	19.12.23.
하수박스 안전진단 등 용역			관거비 (714)	인건비(101)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1-04)	13.4	0.42	-	13.8	

○ 전용사유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편성시 2019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이 시급 10,148원으로 결정·고시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보수 부족분이 발생하여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예상액에서 420천원을 전용하였음

2. 물재생시설과 - 1건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증감액		변경후 예산액	전용 일자
	관	항	세항	목	통계목		증	감		
난지물재생센터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사업비용	영업비용	처리장비	자치단체등이전 (308)	기타부담금 (08)	7,960	-	655	7,305	19.11.07.
탄천물재생센터 민간위탁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201)	공공운영비 (02)	636	-	636	0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201)	공공운영비 (02)	505	-	505	0	
탄천물재생센터 국유지 대부료			처리장비	일반보상금 (301)	기타보상금 (12)	0	1,796	-	1,796	

○ 전용사유

- (기타보상금) 탄천물재생센터 내 국유지 무상사용에 대한 변상금('19년 8월 부과) 납부를 위해 기타부담금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예상액에서 1,796 백만원을 전용하였음

- (기타부담금) 당초 총인처리 및 슬러지 건조시설에 대한 GB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3,000제곱미터 이하)을 추진하였으나, 서대문구 음식폐기물처리시설 면적제공 요청으로 슬러지 건조시설이 제외되어 '21년 이후 허가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보전부담금을 전용함 (공공운영비) 기후환경본부 소관 고농도 음·폐수 반입처리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 물재생센터 온실가스 초과배출량은 기후환경본부 내에서 정산처리토록 협의됨에 따라 미집행 배출권 매입비를 전용함

○ 국유지 대부료 및 변상금 납부 경위

- 탄천물재생센터내 국유지에 대하여 재산관리 위임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14.10.에 무상사용승인 철회하였고, 우리시는 기획재정부에 일방적인 승인 철회의 부당함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무상양여·무상사용 요청 하였으나 불승인 통지되어 '19.8. 무상사용승인 철회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부터 변상금이 부과되어 부득이 예산을 전용하여 변상금을 납부하게 되었음

- ▶ 탄천물재생센터는 '84.1.25.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건설부고시 제18호) 받아 '87.12.9.에 준공되었으며, 인가당시 현재의 국유지(일원동 580-1)는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이었음
 - ▶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재산관리를 위임받아 '14.10.8. 무상사용승인 철회 및 유상대부 안내(이행기간 6개월)를 하였고, 이에 대한 우리시의 무상양여신청('15.3.26.)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불승인('17.10.25) 통지하였으며, '17.12.18. 무상대부 신청하였으나 '19.7.9. 변상금부과 사전통지를 거쳐 '19.8.14. 변상금이 부과되었음.
 - ▶ 「하수도법」 제64조 및 「국유재산특례법」 제4조에 의한 국유지의 무상대여 및 무상양여는 재량행위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에서 불수용
 - ▶ 변상금 부과기간 : '15.4.9.~'19.7.9.(납부기한 : '19.8.29)
- 탄천물재생센터는 도시계획시설로서 설치 당시에 우리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하나 현행 국유지는 당시 무주의 부동산에 해당하여 '91년 국가의 소유로 등록된 사항이므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 및 변상금 부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에 있음

소송제기 사유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의하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 되도록 정하고 있고, 공공시설의 귀속과 관련한 개발행위 허가시에는 관리청의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있으나, 허가당시 무주부동산에 해당하여 우리시로 귀속할 수 없었던 사항으로서,
- ◆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87년 설치완료이후 '14년까지 27년간 평온하게 점유하여 「민법」 제245조에 의한 점유로 인한 소유권 취득(20년 이상)을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유상대부에 따른 변상금 부과는 부당한 사항임

- 기 부과된 변상금 체납시에 연체로 증가 및 대부허가 미이행시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지속 부과될 수 있어 부득이 예산을 전용하여 소송제기 이후 변상금 납부 및 대부허가를 받아 대부료를 납부하였음

※ 변상금 및 대부료 납부현황

(단위 : 백만원)

합 계	변 상 금		'19년 대부료		불용액
	납부액	부과기간	납부액	부과기간	
1,792	1,612	'15.4.9~'19.7.9	180	'19.7.10~'19.12.9	4

※ 탄천물재생센터 국유지 현황

지 번	지목	면적	공시지가	토지가격	도시계획
일원동 580-1	잡종지	22,436 m ²	696,500원	15,626백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자연녹지지역



3. 중량물재생센터 - 2건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증감액		변경후 예산액	전용 일자
	관	항	세항	목	통계목		증	감		
중량물재생센터 운영	사업비용	영업비용	처리장비	수선유지 교체비	수선유지비	12,332	3,077	-	15,409	19.10.28
				일반 운영비	공공운영비	2,139	-	1,377	762	
				재료비	약 품 비	8,390	-	1,700	6,690	
				인건비	기간제근로 자보수	821	80	-	901	
				동력비	동력비	24,754	-	80	24,674	

○ 전용사유

- (수선유지비) 2019년 예산반영 시 중량 슬러지건조시설 준공가동('19년 2월 예정)을 감안하여, 하수슬러지폐기물 처리비를 2018년에 비하여 약 43% 정도 줄여서 2019년 예산에 반영 편성함.(17,047,586천원→7,378,848천원)

슬러지건조시설 공사과정에서 공사현장 여건 변화^(주) 및 주 52시간 작업시간 준수 적용 등의 사유로 시운전 등 정상가동이 늦어져(당초 '19년2월 → 실제 '19년 12월), 슬러지 처리비 부족이 발생하였고, 공공운영비(전기료) 및 약품비 집행잔액 예상액에서 3,077백만원을 전용하였음

(주) 기존 보일러 철거시기 조정('18.4월→'18.7월), 이송설비(컨베어벨트 3대) 추가 반영으로 인한 설계변경 및 추가 시공 등

- (공공운영비 : 전기료) 건조시설등 준공지연으로 시설물 미가동에 따른 미집행이 예상된 전기료(동력비) 에서 1,377백만원을 슬러지 처리비로 전용하고,
(약품비) 예비물량 구매 약품비 1,700백만원을 슬러지 처리비로 전용하였음
- (기간제근로자보수) 촉탁계약직 추가 채용에 따른 급여 부족이 발생하여 동력비 집행잔액 예상액에서 80백만원 전용하였음

4. 난지물재생센터 - 2건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증감액		변경후 예산액	전용 일자
	관	항	세항	목	통계목		증	감		
인력운영비	사업비용	영업비용	처리장비	직무수행경비 (106)	직급보조비 (02)	204	19	-	223	19.11.20.
난지물재생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201)	공공운영비 (02)	612	-	19	593	
인력운영비	사업비용	영업비용	처리장비	인건비 (101)	보수 (01)	7,248	350	-	7,598	19.12.03.
난지물재생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201)	공공운영비 (02)	593	-	320	273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201)	공공운영비 (02)	118	-	30	88	

○ 전용사유

- (직급보조비) 난지물재생센터 '19년도 예산편성시 정원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6급,7급의 경우 정원대비 현원이 많고, 직급별 지급액 인상, 공공안전관 직급별 차등 지급 적용 등 발생으로 부족한 직급보조비 충당을 위해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예상액에서 19백만원 전용하였으며,
- (보수) '19년도 예산편성시 정원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6급,7급의 경우 정원대비 호봉이 높은 현원이 많아 부족한 보수 충당을 위해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예상액에서 350백만원을 전용하였음
- (공공운영비) 기후환경본부 소관 고농도 음·폐수 반입처리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 물재생센터 온실가스 초과배출량은 기후환경본부 내에서 정산처리토록 협의됨에 따라 미집행 배출권 매입비를 전용함